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신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469
----------	-------

발의연월일 : 2024. 2. 1.

발 의 자 : 우신구 · 김예지 · 임병현
이종배 · 김성원 · 박대수
최형두 · 이채익 · 김은희
권명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들은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했음. 그 과정에서 약 8천여 명이 전사 또는 행방불명됨. 이처럼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의 영웅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조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임.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특수임무유공자들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유공자로서의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들을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9호 신설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20.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21.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9호부터 제2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등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18. (생략) <u><신설></u>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 ----- ----- ----- ----- ----- ----- 1. ~ 18. (현행과 같음) 19.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20.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21.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u><신설></u>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9호부터 제21호까지에 해당하

⑥ (생략)	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